

직무지원 보조기구 수가 개선

2025. 10. 2.

목 차

I. 회의개요	3
II. 직무지원 보조기구 수가 개선(안)	4
III. 논의사항	7
IV. 붙임	8
붙임 1. 직무지원 보조기구 단가 비교	
붙임 2. 직무지원 보조기구 연도별 병원별 운영 실적	
붙임 3. 재활보조기구 지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가 신설(안)	

I 회의개요

1. 개요

- (일시) 2025. 10. 2.(목) 13:30 ~16:30
- (장소)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2층 회의실
- (참석대상) 11명
 - (본부) 진료지원부장 부장 및 팀장, 정책사업팀 팀장 및 담당자
 - (근로복지 연구원) 책임 연구원
 - (소속병원) 인천병원 재활의학연구센터장 및 연구간호사
 - (재활공학연구소) 재활공학연구소 연구위원, 책임 연구원, 의지보조기 실장 및 연구원

2. 그간의 경과

- ('25.8.1.) 근로복지연구원 협의
- ('25.8.4./9.1.) 재활공학연구소 회의

3. 세부일정

시간	진행내용
13:30 ~ 13:40	10' · 참석자 소개
13:40 ~ 14:40	60' · 직무지원 보조기구 수가 개선(안)
14:40 ~ 15:40	60' · 논의사항
15:40 ~ 16:30	50' · 안건

※ 회의내용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II 직무지원 보조기구 수가 개선(안)

1. 목적

- 직무지원 보조기구 수가 개선을 통해 중증 산재 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재활과 직장복귀 지원 강화 방안 마련
 - 산재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직무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지제작부터 직무지원 재활단계까지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가 개선(안) 마련

2. 추진경과

- (2011~2017년) 직무지원 보조기구 시범사업 및 재활중기 발전 세부 추진계획(제3·4차)에 따라 예산으로 지원
- (2018년) 제작계획서 및 팔·다리의지 등 직무지원 보조기구 수가 10종 신설
- (2019년) 팔·다리의지 전자제어식 등 직무지원 보조기구 수가 6종 신설

3. 주요내용 및 현황

- (산정지침) 작업능력 평가 및 강화훈련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의지 및 보조기 제작실을 갖추고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 2인 이상과 의지·보조기기사 1인 이상이 있는 경우
 - (지원대상) 상·하지 절단 또는 척수손상 환자로서 직무분석 결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품목의 재활보조기구로는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자
 - (지급기준) 직무지원 보조기구는 내구연한의 제한 없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산재 요양급여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준용
 - 산재재활보조기구와 사용 목적 및 기능이 다르므로 각각 지급
- ※ 산재재활보조기구 : 기능상실에 대한 동일 목적의 경우, 1개 품목 지급하고 내구연한 경과시 추가 지급 가능

○ (수가항목) <소속병원> 직무지원 의지·보조기(14개), 행위료(2개) 등 16개로 구성

▶ 보조기구(14개) : 팔의지(5개), 다리의지(5개), 휠체어(2개), 기타(2개) * 건강보험(93개), 산재보험(137개)				
▶ 행위료(2개) : 직무지원 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제작계획서 장해부위와 직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활성화 를 위하여 행위 수가 신설				
* 건강보험에서는 검수료, 제작계획서 수가 없이 재활보조기만 처방				
	항목	소속병원	산재	건보
	처방 및 검수료	○	○	X
	제작 계획서	○	X	X

○ (금액 산정기준) 직무지원 보조기구 2017년 평균 구입금액에 품목별 표준 제작비용(경비 포함)을 합산하여 산정

※ 제품원가+ 표준제작시간×시간당 인건비+경비**

* 장애인보장구 품목확대 및 분류체계 개선 등의 연구(국민건강보험, 인제대합동연구) 참조

** 제품원가의 5%

□ 운영현황

○ (운영실적)

(단위:원,건)

순번	수가명	단가	합계	'25년 ~7월	'24년	'23년
	합계		3,482	802	1,406	1,328
1	직무지원 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51,690	1,206	273	506	481
2	직무지원 보조기구 제작 계획서	94,040	1,031	256	410	365
3	팔 의지(기계식)	2,555,160	33	12	14	7
4	팔 의지(전자제어식-일반)	8,540,160	0	0	0	0
5	팔 의지(전자제어식-특수)	17,160,160	0	0	0	0
6	팔 의지(특수 코팅-기본)	328,080	668	146	278	244
7	팔 의지(특수 코팅-맞춤)	905,580	20	6	8	6
8	다리 의지(인공무릎-기계식)	4,574,520	74	18	31	25
9	다리 의지(인공무릎-전자제어식)	17,886,920	9	2	2	5
10	다리 의지(인공발-일반)	2,015,280	12	1	4	7
11	다리 의지(인공발-특수-기계식)	4,008,180	285	65	114	106
12	다리 의지(인공발-특수-전자제어식)	11,275,830	0	0	0	0
13	휠체어(일반)	4,420,500	14	1	0	13
14	휠체어(특수)	6,500,000	5	0	3	2
15	기타(맞춤 신발)	1,160,160	2	0	2	0
16	기타(맞춤 깔창)	886,720	123	22	34	67

○ (업무절차) 처방(병원) → 제작(연구소) → 검수(병원) 순으로 보조기구 지원

공단병원	→	재활공학연구소	→	공단병원
❶ 직무분석 환자면담 통해 장해유형, 직무특성 분석		❷ 제작계획서 작성 대상자 상담 및 지원 품목 선정, 제작공정 소요부품 등 작성		❸ 검수 확인 공단병원 진료과장 직접 검수
❹ 대상자 처방 지원유형(고용촉진형, 유지형) 보조기 유형		❺ 보조기 제작, 지급 취형·조립·장착 의지착용·의지관리법 교육		❻ 진료비 청구·정산 (병원수익) 처방 검수료 (연구소수익) 제작 계획서 + 보조기 금액

4. 개선사항

- (분류체계 기준 개선) 재활의지·보조기구 종류, 장해 상태 및 세부 부품에 따른 분류체계 세분화
- (지급기준 개선) 「직무지원 보조기구」 산정지침 및 품목별 지급기준 개선
- (수가 현실화) 부품별 시작가격, 표준제작시간(제작, 장착, 교육), 인건비, 경비 재검토
- (서식 보완) 세부부품내역 및 제작과정 작성 표준화를 위한 검수확인서·제작계획서 서식 보완
 - 소속병원과 연구소간 제작계획서 EMR 조회 기능 개선 (프로그램 개선 완료)

III 논의사항

- ◆ 직무지원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타당성, 활성화를 위한 운영체계 마련
 - 재활보조기구 운영위원회, 병원내 팀구성 (제작~재활단계)

○ (재활보조기구 운영위원회) 산재재활보조기구(직무지원 보조기구) 운영 및 수가개선 논의

- 재활공학연구소 주관으로 정례적 회의 개최

○ (차별성 강화) 직무지원 보조기구 수가 취지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방안

- 대상자(고용촉진형, 고용유지형) 선정
- 보조기 제작부터 재활단계까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가체계 구축

○ (수가 조정) 직무지원 보조기구 분류체계 및 단가 재조정 방안 마련

- 모니터링 강화 및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서식 개선
- 손상부위별, 부품별 분류체계 검토
- 직무지원 보조기구 수리료 및 의지 외 재활보조기구 신설 여부 검토
- 제품원가 시장가격 제조사, 표준제작시간 및 인건비 현행화

직무
* 직군보조기 없음 -
* 중복판단 → 예비도
* 모야에서 리공문은 부보로 보임.

붙임1 직무지원 보조기구 단가 비교

구분	세구분		수가	금액	'24년도 제품원가	차액	비고
팔 의 지	기계식		2,555,160원	2,251,395원	1,596,262원	303,765원	
	전자 제어식	일반형	8,540,160원	8,975,320원	8,000,000원	△435,160원	지급이력없음
		특수형	17,160,160원	42,575,320원	40,000,000원	△25,415,160원	지급이력없음
	특수 코팅	기본형	328,080원	329,514원	259,030원	△1,434원	A 호
		맞춤형	905,580원	934,165원	834,889원	△28,585원	
다 리 의 지	인공 무릎	기계식	4,574,520원	5,343,541원	4,048,031원	△769,021원	
		전자 제어식	17,886,920원	27,343,108원	25,000,000원	△9,456,188원	
	인공발	일반	2,015,280원	1,678,612원	722,000원	336,668원	
		기계식	4,008,180원	3,947,457원	2,882,805원	60,723원	
		전자 제어식	11,275,830원	27,170,512원	25,000,000원	△15,894,682원	지급이력없음
휠 체 어	일반형	4,420,500원	5,710,688원	5,438,750원	△1,290,188원	25년기준	
	특수형	6,500,000원	4,462,500원	4,250,000원	2,037,500원		
기 타	맞춤 신발		1,160,160원	1,635,384원	900,000원	△475,224원	
	맞춤 깔창		886,720원	851,113원	591,414원	35,607원	

* 금액: 제품원가+(제작시간×시간당 인건비)+경비

* 제품원가: 2024년 재활공학연구소 직무지원 보조기구 제품원가

* 제작시간: 장애인보장구 품목확대 및 분류체계 개선 등의 연구 참조

* 시간당 인건비: 2024년도 재활공학연구소 의지보조기기사 5급 (대표호봉:14호봉) 평균연봉 (57,993,270/12=4,832,772원)기준 월급여를 168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28,766원 적용

* 경비: 제품원가의 5%

붙임 2 직무지원 보조기구 연도별 병원별 운영 실적

- 기간: '23년 1월~12월

(단위:건)

순번	수가명	합계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동해
	합계	1328	411	87	258	172	188	192	20
1	직무지원 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481	139	29	87	86	65	67	8
2	직무지원 보조기구 제작 계획서	365	133	29	84	0	58	57	4
3	팔 의지(기계식)	7	5	1	1	0	0	0	0
4	팔 의지(전자제어식-일반)	0	0	0	0	0	0	0	0
5	팔 의지(전자제어식-특수)	0	0	0	0	0	0	0	0
6	팔 의지(특수 코팅-기본)	244	79	12	64	16	35	38	0
7	팔 의지(특수 코팅-맞춤)	6	4	0	0	0	0	2	0
8	다리 의지(인공무릎-기계식)	25	4	2	1	4	6	7	1
9	다리 의지(인공무릎-전자제어식)	5	3	1	0	0	1	0	0
10	다리 의지(인공발-일반)	7	4	0	2	0	0	0	1
11	다리 의지(인공발-특수-기계식)	106	30	6	16	15	21	16	2
12	다리 의지(인공발-특수-전자제어식)	0	0	0	0	0	0	0	0
13	휠체어(일반)	13	2	2	3	0	0	2	4
14	휠체어(특수)	2	0	0	0	0	1	1	0
15	기타(맞춤 신발)	0	0	0	0	0	0	0	0
16	기타(맞춤 깔창)	67	8	5	0	51	1	2	0

- 기간: '24년 1월~12월

(단위:건)

순번	수가명	합계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동해
	합계	1406	534	66	296	135	165	190	20
1	직무지원 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506	180	22	110	67	55	65	7
2	직무지원 보조기구 제작 계획서	410	174	22	93	1	55	59	6
3	팔 의지(기계식)	14	8	1	0	3	1	1	0
4	팔 의지(전자제어식-일반)	0	0	0	0	0	0	0	0
5	팔 의지(전자제어식-특수)	0	0	0	0	0	0	0	0
6	팔 의지(특수 코팅-기본)	278	108	13	68	26	31	30	2
7	팔 의지(특수 코팅-맞춤)	8	0	0	0	1	0	7	0
8	다리 의지(인공무릎-기계식)	31	16	1	3	3	4	4	0
9	다리 의지(인공무릎-전자제어식)	2	0	0	0	1	1	0	0
10	다리 의지(인공발-일반)	4	0	0	0	3	0	0	1
11	다리 의지(인공발-특수-기계식)	114	35	4	21	13	16	21	4
12	다리 의지(인공발-특수-전자제어식)	0	0	0	0	0	0	0	0
13	휠체어(일반)	0	0	0	0	0	0	0	0
14	휠체어(특수)	3	1	0	1	0	0	1	0
15	기타(맞춤 신발)	2	2	0	0	0	0	0	0
16	기타(맞춤 깔창)	34	10	3	0	17	2	2	0

- 기간: '25년 1월~7월

(단위:건)

순번	수가명	합계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동해
	합계	802	320	45	125	85	102	125	0
1	직무지원 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273	107	15	42	33	34	42	0
2	직무지원 보조기구 제작 계획서	256	106	15	41	19	34	41	0
3	팔 의지(기계식)	12	8	0	0	1	0	3	0
4	팔 의지(전자제어식-일반)	0	0	0	0	0	0	0	0
5	팔 의지(전자제어식-특수)	0	0	0	0	0	0	0	0
6	팔 의지(특수 코팅-기본)	146	46	10	31	10	27	22	0
7	팔 의지(특수 코팅-맞춤)	6	1	0	0	0	0	5	0
8	다리 의지(인공무릎-기계식)	18	14	0	0	1	1	2	0
9	다리 의지(인공무릎-전자제어식)	2	1	0	0	1	0	0	0
10	다리 의지(인공발-일반)	1	1	0	0	0	0	0	0
11	다리 의지(인공발-특수-기계식)	65	28	1	11	12	4	9	0
12	다리 의지(인공발-특수-전자제어식)	0	0	0	0	0	0	0	0
13	휠체어(일반)	1	0	1	0	0	0	0	0
14	휠체어(특수)	0	0	0	0	0	0	0	0
15	기타(맞춤 신발)	0	0	0	0	0	0	0	0
16	기타(맞춤 깔창)	22	8	3	0	8	2	1	0

붙임 3 재활보조기구 지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가 신설(안)

□ 현행기준 및 문제점

- (현행기준) 재활보조기구 지급 절차는 처방 → 제작 → 검수 → 훈련의 과정을 거침
- (문제점) 재활보조기구 특성 상 환자의 신체 기능변화 및 재활 보조기구 적응 · 훈련을 위한 적절한 지급 서비스가 필요하나 대부분 환자 자비부담 처리 또는 무상 서비스로 제공

□ 적용방안

- 훈련용 재활보조기구 제작 및 재활보조기구 수정 수가 신설
 - (적용대상) 집중재활 치료기간 중 훈련용 재활 보조기구가 필요하거나 재활 보조기구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구분	산정기준	금액(원)
훈련용 재활보조기구 제작	아급성기 산재환자의 적극적인 조기재활 치료를 위해 최종 보조기구 제작 전에 기능형 팔·다리의지, 팔·골반/다리 보조기 등 훈련용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산정하며 요양기간 중 1회 지급하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대 5회 이내로 지급	
	기본 팔보조기	• 기본 417,000
	단순 골반/다리보조기 팔 의지(소켓을 포함하지 않는 의지) 다리 의지(소켓을 포함하지 않는 의지)	• 단순 708,300
	복잡 팔 의지(소켓을 포함하는 의지) 다리 의지(소켓을 포함하는 의지) 휠체어 자세보조용구	• 복잡 2,102,700
훈련용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훈련용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 후 일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한 경우	51,690
재활 보조기구 수정	• 보조기구 착용 신체의 변화로 지급한 보조기구의 형태 및 정렬 변경, 세부 기능조정 등의 수정을 제공하는 경우 요양기간 중 10회 이내 산정 • 재활보조기구 수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재활보조기구에도 산정	• 기본 25,000 • 단순 75,000 • 복잡 135,000

■ 직무지원 보조기구 지원사업 개요

- 산재노동자의 적극적 사회·직업 복귀를 위해 “직무 특성별, 장애유형별 맞춤형”으로 첨단 직무지원 재활보조기구를 개발하여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
- 2018.4.2.부터 직무지원 보조기구 산재보험 요양급여(시범)로 지급

■ 사업추진경과

- ① 2011년 직무지원 보조기구 시범 및 재활사업중기계획(제3-4차)에 따른 예산사업(2012년~현재)으로 추진
- ② 지급제품 선정 및 지급절차 기준(안) 마련(2017년 4월)
- ③ 근로복지연구원과 정책과제 합동 연구용역(2017년)
- ④ 직무지원 보조기구 수가 신설(2018년 4월)(10개)
- ⑤ 지역서비스 센터 신규 개소 및 인력배치
 - 안산병원 1월(1명), 대구병원 3월(2명), 인천병원 5월(2명)
- ⑥ 직무지원보조기구 수가 추가 신설(6개) (2019년 10월)

■ 문제점

1. 직무지원보조기구 지원 대상 및 절차의 문제

- 현재 직무지원보조기구 지원사업은 **특정 서류**를 요구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일부 직업 재해 장애인들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고용 확인의 한계:** 직무지원보조기구 신청 시 재직증명서 등 고용 확인 서류가 필수적이지만, 고용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나 신용 불량자는 이를 제출하기 어려움. 그 결과, 실제로 근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 개선 방안: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고용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대체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농업인의 지원 제외:** 농업인은 농지대장을 통해 고용 상태를 증명해야 하지만,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닌 농지에서 일하는 경우 농지대장 발급이 불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이는 직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임.

2. 신속대응반 지원의 수가 산정 모호성

- 현재 신속대응반의 맞춤형 보조기구 제작은 공식적인 수가 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운영 및 관리의 어려움이 있음.
 - **문제점:** 처방 코드가 없는 맞춤형 제작은 공적 급여로 청구할 수 없어, 연구소의 별도 관리가 필요함.
 - **사례:** 탁구 선수가 직무지원으로 코팅형 의수를 처방받은 후, 신속대응반에서 탁구 그림 전용 모듈을 처방 없이 맞춤형으로 제작 및 지급하였음. 이 경우 해당 제작 비용에 대한 청구 코드가 없어 연구소 자체 예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3. 맞춤형 보조기구의 비용 산정 한계

- 맞춤형 보조기구는 직접적인 재료비 외에 고도의 전문성과 시간이 투입되지만, 현재 수가 체계는 이러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문제점:** 기존 수가(예: 상지의지 기계식 수가 2,555,160원)는 연구 인력의 설계, 가공, 제작에 투입되는 시간, 인건비, 노력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산정하지 못함.

• 사례:

☞ 사례 1: 장애인 체육회 코치에게 “기계식 상지의지(코드 91706)”를 처방하고, 운동용 말단 장치를 신속대응반이 맞춤형으로 제작 지원했음.

☞ 사례 2: 양측 전자의수 사용자가 농기구 취급을 위해 “기계식 상지의지(코드 91706)”를 처방받고, 신속대응반이 농기구 전용 의수를 맞춤형으로 제작 지원했음.

- 이러한 사례들은 맞춤형 보조기구 제작이 일반적인 재료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연구 개발 비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따라서 현재의 수가가 과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오히려 맞춤형 제작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신속대응반의 사회복귀 지원 기기 및 수가화 방안

- 신속대응반은 단순히 직업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복귀**를 돕기 위한 다양한 보조기구를 설계하고 제작하여 지급하고 있음.
 - **지원 사례:** 상지 절단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드레스 트리(옷 입기 보조구), 운전봉, 식사 보조도구, 농기구, 마우스, 요리 도구 등을 맞춤형으로 제작 지원함.
 - **향후 과제:** 이러한 맞춤형 지원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지만, 현재 공식적인 운영 코드가 없음.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맞춤형 기기 제작에 대한 운영 코드를 신설하고, 수가화(보험 수가 적용)를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5. 기존 요양급여와의 중복성 문제

- 현재 직무지원수가는 기존 요양급여 항목과 일부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요양급여의 근전전동의수(타-6-1, 7-1, 8-1, 9-1) 항목과 직무지원수가의 상지의지(전자제어식, 91705) 항목 간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음.
 - **문제점:** 두 항목이 비슷한 보조기구를 다루고 있어, 각 제도의 고유한 목적과 역할이 불분명해질 수 있음. 이는 행정적 혼란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긍정적 효과:** 하지만 이러한 중복성은 한편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 예를 들어, 미관형 의수를 요양급여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라도,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직무지원 수가로 근전전동의수를 추가로 처방받을 수 있음. 이는 직업 활동에 특화된 고기능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음.

6. 상지 의지(코팅형) 및 맞춤형 갈창 수가의 문제점

- 현재 상지 의지 수가 체계는 현실적인 제작 단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품목별 세분화가 미흡해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상지 의지(복수코팅-기본)의** 현행 수가 328,080원은 현재 제작 단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한미의수(32만 원)나 초이스 리갈(39만 원)과 같은 실제 제작 단가를 고려하면 수가 조정이 시급함.
 - 또한, 손가락 하나당 85,000원의 단가가 적용되어야 하는 수지(손가락 보철)의 경우에

도, 상지 의지 특수코팅 기본 수가가 그대로 적용되어 과다 청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수부와 수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가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 **상지 의지(특수코팅-맞춤형)**의 현행 수가 905,580원 역시 제작 단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 맞춤형 의지는 주로 금형을 제작하여 환부의 특이성이나 특정 작업(예: 페인트 칠)에 특화된 손 모양을 구현하는 데 사용됨.
 - ☞ 특히 보훈병원과 같은 전문 기관에서 주로 제작하며, 일반적인 의지보다 훨씬 높은 기술과 비용이 투입됨(단가 1,384,000원). 따라서 현재의 수가로서는 이러한 맞춤형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어려움. 현실적인 제작 단가를 반영하여 수가 재조정이 필요함.
- **맞춤형 깔창(886,720원)**의 경우에도 다리 길이 차이를 보존하기 위해 주로 2개씩 한 세트에 지급되지만, 족지(발가락) 변형에도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고 있음. 족지 보조기구의 실제 제작 단가는 14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으로, 현재 산정된 수가보다 훨씬 낮음.
 - ☞ 따라서 깔창, 족부(족지) 수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7. 직무지원수가 내 지급이 어렵거나 이력이 없는 품목의 문제점

- 현재 직무지원수가 항목에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실제 지급이 어렵거나 아예 지급 이력이 없는 품목들이 존재함.
- **수전동 휠체어(4,420,500원)**: 국산 수전동 휠체어는 제작 단가 인상(본인부담금 130만 원 이상 발생)과 주요 부품 회사들의 도산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었음. 현재 대체품이 연구·개발 중이지만, 상용화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될 예정임.
- **전자제어식 팔 의지(17,160,160원)**: 파설 핸드 의지는 1,700만 원대의 고가 품목으로, 국내에서는 제작되지 않고 2,000만 원 이상의 외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음. 높은 가격 때문에 직무지원수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이력이 없음.
- **전자제어식 인공발(11,275,830원)**: 인공발의 경우도 전자제어식 품목의 처방 및 지급 이력이 전무함.
- **특수 휠체어(전동기립형, 6,500,000원)**: 국내 업체인 상운산업의 전동기립형 휠체어는 약 500만 원대였으나 안전 문제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었음. 현재 휠로피아의 수입품 'KP80'이 지급되고 있지만, 단가(400만 원대)가 수가(650만 원)에 비해 현저히 낮아 수가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됨.
- ☞ 품목의 현실적인 단가, 안전성, 그리고 국내 생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가를 재정비해야 함.